

I. 경제강국 도약 지원

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

(11)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(조특법 §38의3, 조특령 §35의5)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□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○ (내용) ①내국법인이 ②외국자회사 주식등을 ③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① (출자법인)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 ② (출자자산) 출자법인이 20%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③ (피출자 외국법인) 출자법인이 80% 이상 지분 보유 ※ 피출자 외국법인은 외국자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해당 사업 연도 말까지 계속 필요 ○ (사후관리) 다음 사유 발생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양도차익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(i)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* * (예외) 출자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등 (ii) 피출자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을 처분 (iii) 내국법인, 피출자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 ○ (적용기한) '28.12.31.

<개정이유>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

<적용시기> '26.1.1.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